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황운하·김재원·정춘생
서왕진·차규근·백선희
이해민·신장식·이강일
장종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·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·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, 인권침해 예방,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.

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「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,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,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(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)

등).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제4항 중 “자격·업무”를 “자격·업무, 처우 및 급여, 복리후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,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의2(통합사례관리) ① ~ ③ (생 략)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의 <u>자격·업무</u> 등 운영에 필 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 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 <u><신 설></u>	제42조의2(통합사례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 <u>자격·업무, 처우 및 급여,</u> <u>복리 후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<u>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</u> <u>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</u> <u>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</u> <u>과를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,</u> <u>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</u> <u>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</u> <u>여야 한다.</u>